

1. 개정이유

감염병 확산 등으로 인한 인력난 해소를 위하여 비전문취업(E-9) 및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을 완화하고, 외국인등록증 서식을 변경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함

2. 주요내용

가. 감염병 확산 등의 경우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완화(안 제17조의3제3항제1호부터 제3호)

- 제조업, 농어업 등 업종의 인력난 해소를 위해 감염병 확산 등의 사유로 인해 연장된 비전문취업(E-9), 선원취업(E-10) 자격 외국인의 체류기간은 사증발급인정서 발급 제한 대상 기간에 포함되지 않도록 함

나. 외국인등록증 서식 변경

- 10년 전 흑백 인쇄 기술을 사용하고 있는 현행 외국인등록증(영주증, 국내거소신고증 포함)에 최신화된 인쇄기법을 도입하고 사진크기·성명 인쇄 공간 확대 등 그간 인지된 불편 사항을 개선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 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 의 : 0000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 타 : 1) 신·구조문대비표, 별첨

2) 입법예고(9999. 12. 31. ~ 12. 31.)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3)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9조제1항제9호 중 “25”를 “20. 특정활동(E-7)까지, 20의2. 계절근로(E-8), 21. 비전문취업(E-9)부터 25”로 한다.

제15조제3항 단서 중 “제78조제5항”을 “제78조제6항”으로 한다.

제17조의3제2항제4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경과되지”를 “지나지”로 하고, 같은 호 가목 중 “형의 선고”를 “실형의 선고”로, “집행을 받지 않기로 한”을 “집행이 면제된”으로 하며, 같은 조 제3항제1호 중 “5년(「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된 취업활동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의3제3항제2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내에 5년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에 따라 연장허가를 한 체류기

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제17조의3제3항제3호 각 목 외의 부분 중 “5년(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년) 이상”을 “5년이상”으로 하고, 같은 호 각 목 외의 부분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연장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별표 7 제1호나목 중 “받은”을 “한”으로 하고, 같은 목 후단 중 “받은”을 “한”으로 하며, 같은 호 다목에 후단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이 경우 적발된 날부터 소급하여 3년이 지난 처분이더라도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 대상에 적용한다.

별지 제10호서식 중 “※”를 “※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bordercontrol@korea.kr),”로 한다.

별지 제10호의2서식 중 “※”를 “※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bordercontrol@korea.kr),”로 한다.

별지 제56호의4서식 중 “※”를 “※ 이의신청을 할 때에는 전자우편(bordercontrol@korea.kr),”로 하고, 같은 서식 중 “file”를 “file an objection via e-mail(bordercontrol@korea.kr),”로 한다.

별지 제66호서식 및 별지 제67호서식을 각각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67호의2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71호서식을 별지와 같이 한다.

별지 제138호의2서식 앞쪽 중 “주민등록번호(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국내

거소신고번호) Resident Registration No.(Alien Registration No. or Domestic Residence Report No.)”를 “생년월일(Date of Birth)”로 하고, 같은 서식 뒤쪽에 가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가. 본인의 배우자, 본인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
별지 제138호의2서식 뒤쪽의 기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에 나목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나. 본인의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 또는 형제·자매(본인의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가.에 해당하는 사람이 없는 경우)
별지 제138호의2서식 뒤쪽의 기호(-)를 삭제하고, 같은 뒤쪽 중 “deceased”를 “deceased and the principal does not have any of those listed in the category A”로 한다.

별지 제139호서식 중 “국적 (Nationality)”를 “국가/지역(Country/Region)”으로 한다.

부 칙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등록외국인대장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번 호	등록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구외국인등록번호 또는 구국내거소신고번호	국 적	성 명	성 별	생년월일	비 고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서식]

앞 쪽

외국인등록증 RESIDENCE CARD		사진 26mm x 33.5mm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123456 - 1234567	
성명 Name	HONG SPECIMEN	
국가 / 지역 Country / Region	REPUBLIC OF UTOPIA	
체류자격 Status	기업투자(D-8)	
발급일자 Issue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CHIEF, ○○IMMIGRATION OFFICE		

85.6mm x 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체류기간(Duration of Stay)		
허가일자	만료일자	확 인
•체류지(Address)		
신고일	체 류 지	
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www.hikorea.go.kr 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 (하이코리아)		

■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 [별지 제67호의2서식]

(앞 쪽)

영 주 증		사진 26mm x 33.5mm
PERMANENT RESIDENT CARD		
외국인등록번호 Registration No.	123456 - 1234567	
성명 Name	HONG SPECIMEN	
국가 / 지역 Country / Region	REPUBLIC OF UTOPIA	
체류자격 Status	영주(F-5)	
발급일자 Issue Date ○○출입국·외국인청(사무소·출장소)장 CHIEF, ○○ IMMIGRATION OFFICE		

85.6mm x 54mm(Polycarbonate 0.76T)

(뒤 쪽)

•영주증 유효기간 : (Card Expires)	
•체류지(Address)	
신고일	체 류 지
유효 및 취업가능 확인 www.hikorea.go.kr 민원안내 국번없이 1345 (하 이 코 리 아)	

외국인등록증 발급대장

○○ 출입국 · 외국인청(사무소 · 출장소)

번호	발급일	외 국 인 등 록 번 호	구 외 국 인 등 록 번 호	국적	성명	재발급일	재발급 사유	체류자격	체류기간	비고

210mm×297mm[백상지(80 g / m²) 또는 중질지(80 g / m²)]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영 제11조제2항에 따라 법무부 장관이 재외공관의 장에게 위임 하는 사증발급 권한(영 제7조의 2제4항에 따른 전자사증 발급권 한은 제외한다)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 8. (생 략) 9. 그 밖에 영 별표 1의2 중 체 류자격 4. 문화예술(D-1), 6. 기술연수(D-3)부터 10. 주재 (D-7)까지, 12. 무역경영(D- 9), 14. 교수(E-1)부터 25. 동 반(F-3)까지, 27. 결혼이민(F- 6) 및 30. 기타(G-1)의 자격에 해당하는 사람 중 상호주의 또는 대한민국의 이익 등을 위하여 법무부장관이 특히 필 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에 대 한 체류기간 1년 이하의 사증 발급 ② (생 략)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② (생 략)	제9조(사증발급권한의 위임) ① - ----- ----- ----- ----- ----- ----. 1. ~ 8. (현행과 같음) 9. ----- ----- ----- ----- ----- 20. <u>특</u> <u>정활동(E-7)까지, 20의2. 계절</u> <u>근로(E-8), 21. 비전문취업(E-</u> <u>9)부터 25</u> ----- ----- ----- ----- ----- -- ② (현행과 같음) 제15조(관광등을 위한 입국허가) ①·② (현행과 같음)

③제2항에 따라 입국허가를 받은 자에 대하여는 체류자격변경 또는 체류기간연장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청장·사무소장 또는 출장소장이 제78조제5항에 따라 권한이 위임된 범위에서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④ (생략)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생략)

②법무부장관은 「과거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피초청 외국인을 사용하려는 사용자사업주 또는 법 제9조제2항에 따라 외국인을 초청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초청 외국인에 대한 사증발급인정서를 발급하지 않을 수 있다.

1. ~ 3. (생략)

4. 「근로기준법」을 위반하여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

③-----

-----.

제78조제6항-----

-----.

④ (현행과 같음)

제17조의3(사증발급인정서 발급의 기준) ① (현행과 같음)

②-----

-----.

1. ~ 3. (현행과 같음)

4. -----

----- 지나지

가.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형의 집행이 종료
되거나 집행을 받지 않기
로 한 날

나. (생략)

5. ~ 8. (생략)

③ 법무부장관은 영 별표 1의2
중 체류자격 21. 비전문취업(E-
9) 또는 22. 선원취업(E-10)에
해당하는 사증발급신청서를 받
급받으려는 외국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
우에는 사증발급신청서를 발급
하지 않는다.

1. 비전문취업(E-9) 체류자격으
로 국내에 5년(「외국인근로
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취업
활동 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한 사실이 있는
경우 <단서 신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

가. ----- 실형의 선고-

---- 집행이 면제된 ----

나. (현행과 같음)

5. ~ 8. (현행과 같음)

③ -----

-----.

1. -----

----- 5년이상 -----

--. 다만,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8

조의2제2항에 따라 연장된 취

업활동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

다.

2. 선원취업(E-10) 체류자격으

<u>로 국내에 5년(법무부장관이</u> <u>감염병 확산, 천재지변 등에</u> <u>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를 위</u> <u>하여 「선원법 시행령」 제39</u> <u>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부장</u> <u>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5조</u> <u>에 따라 체류기간 연장허가를</u> <u>한 경우에는 6년) 이상 체류</u> <u>한 사실이 있는 경우</u> 3. 비전문취업(E-9) 또는 선원 취업(E-10) 체류자격으로 국 내에 체류한 기간을 합산한 기간이 <u>5년(다음 각 목의 어느</u> <u>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6</u> <u>년) 이상인 경우 <단서 신설></u> 가.·나. (생략) ④ (생략)	<u>로 국내에 5년이상 체류한 사</u> <u>실이 있는 경우. 다만, 법무부</u> <u>장관이 감염병 확산, 천재지변</u> <u>등에 따른 선원인력 수급관리</u> <u>를 위하여 「선원법 시행령」</u> <u>제39조제1항에 따른 해양수산</u> <u>부장관의 요청을 받아 법 제2</u> <u>5조에 따라 연장허가를 한 체</u> <u>류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u> 3. ----- ----- ----- ----- <u>5년이상</u> ----- ----- ----- .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 여 연장된 기간은 산입하지 않는다. 가.·나. (현행과 같음) ④ (현행과 같음)
--	--